

지자체 기간통신사업 허용 관련 정부 입장(토론문)

(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 박철)

□ 배경

- 최근 IC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한 공공와이파이 수요 증가로 인해 국민 통신접근권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
- 이에 지방자치단체(이하 '지자체')는 기존 통신사업자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공공와이파이서비스 및 사물인터넷 이용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있으나,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불가함
- 국회도 7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으며, 지난 3월 15일에는 관련 법안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됨

□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유

- 지자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,
 -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체계 하에서 지자체가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사업 등을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
□ 개정안 주요내용

- 공공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하여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
-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근거 마련

□ 국회(과방위 법안 2소위) 논의사항

- 공공와이파이 보안 관련사항의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, 지자체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도심이 아닌 수변공원 등 기존 통신망이 미치지 않는 서비스 사각지대에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임
- 지자체가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, 투자대비 효용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함
- 지자체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가계통신비 절감 뿐 아니라 직·간접적 편의도 고려할 필요
-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영향으로 과도한 투자와 중복 투자, 재정여력에 따른 지역간 디지털격차 심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장치가 필요함

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

- 자가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국민 통신복지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함
-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필요함
- 다만, 민간 통신시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범위를 비영리·공익 목적으로 한정하고,
 - 통신망의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자체가 기간통신 사업 등록시 사업의 적합성 검토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